

제/장 총 칙

제 /조 : 보회의 명칭은 부산 아마큐어 무선클럽이라 칭하고 B.A.R.C. (Busan Amateur, Radio Club)라 약칭한다.

제고조 : 본화는 정당한 아마투어 무선통신과 실험을 장려지도하고 무선 통신분야의 기술향상과, 이의 보급및 공공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사 업

제3조 8 본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/,무선통신이 관한 출판물 간행

2. 서울 연맹과 QSL 의 중계 전송

3. 무선 통신에 관한 강습회, 견학회, 연구발표회 개최

4. 기타, 본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

제4조 : 본회의 회원은 다음 두가지로 구분한다.

人导學到是

2. 정회원

제5조 응특별회원은 아마츄어 무선국을 개국한자와 개국할수있는 지식을

제6조 : 정회원은 한국아마츄어 무선연맹(이라 KARL 이라 약칭한과) 6에 가입 한자로서 부산에 거주하는자면 누구나 가원할수있다.

재기조 : 회원을 탈퇴고적 할때는 소정의 절차를 끝마쳐야 하며 회원으로서 6개월 이상 미남하였을 때는 재명한다

제8조 : 회원은 본회의 향상 발전을 위하여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
제 9조: 회원으로서 본회의 또는 KARL의 규칙에 위반하거나 본회의 사업및 그목적을 지배하고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KARL과 협의 하여 제명시킬수 있다

제 3 장 임원 및 고문

제/0조 : 본회는 고문을 둔다, 고문은 본회의 특별회원 중 임원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추대 한다

제 //조 :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한다.

제 /2조 : 본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푼다

1.회장 : 1명 2.이사 : 7당이내



제/3조: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.

제 4조 : 회장이 위고시는 이사중의 한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/5조: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본담 처리 한다.

제 생조: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회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교통비를 부담한다

제기조: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보컬 산기로 하고 그임기는 잔임자의 장임기간으로 한다.

제18조 : 임기완료후 후임자가 귀임할때 또는 전임자가 계속 집무한다.

제 19조 : 임원으로써 직무를 태만하지나 또는 부정행위가 있을때) 총회의 결의로서 이를 해임한다.

제 4 장 회 의

제20로 :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으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의장 이 된다, 정기총회, 임시총회, 이사회

제21조 : 정기총회년 매년 /회에 2월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또는 제작회원 (사 · 이상의 동의가 있을때 이를 소집한다, 이 이사회는 회장,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제작회원 1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.

제22조 : 종회는 제적 회원수의 성 이상의 출석과 다수결의 로서 행하고 가부 등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

제23조 ?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

1. 정관 개정안

고, 세일 세울의 예산의 결의와, 결산의 승인

3 제정상의 진급 처분인과 예산지를에 관한사항

4. 회무보고와 계획

5. 임원선거와 개방안

6 기타 중요 사항

제24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절 처리한다.

제 5장 제정과 회계

제25조 보회의 기금과 일반경비는 월 정회비 및 본회 사업과 제정에 관하여 생기는 수입으로 충당한다

제26조 : 전조의 기금과 일반경비 부담액은 이사회에서 사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

제27조 등 본회의 입회금은 가입당시 납부하며, 월정회비는 매 3개월단위

로 이를 납부하더야 한다.

제 28조 은 찬조금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 또는 일반 인사에 의한 찬조금 으로 한다.

제29조 : 회계 연도는 2월 / 일 부터 익년 / 월 31일 까지로 하며 회비의 수입결산을 연도결과와 동시에 회무성적과 터볼어 총회에 보고한다.

제 6장 부칙

제30조 은 본규칙에 규정하지 않는 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 제 31조 은 본규약은 본회 설립 즉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